



# 가 정 통 신 문



제 목      코로나19 감염증 예방 안내

담    당      학생부 보건담당

☎ (063) 546-2772

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!!

코로나19 및 유행성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기침 예절, 개인 위생 지도 등 지속적인 방역 수칙을 준수하시고, 가정에서 면역력 증진을 위한 개인 건강생활 실천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3.2.10. 질병관리청

## 안전한 일상 회복을 위한 5대 중요수칙

- 

**수칙1**  
코로나19 예방접종 동참하기
- 

**수칙2**  
사람이 많고, 밀폐된 곳에서 **마스크 쓰기**
- 

**수칙3**  
30초 비누로 올바른 손 씻기,  
기침할 땐 옷소매로!
- 

**수칙4**  
1일 3회(회당 10분) 이상 환기,  
손이 자주 닿는 표면 1일 1회 이상 소독
- 

**수칙5**  
코로나19 증상 발생 시 진료받고 집에 머물며,  
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

2023년 8월 25일

김 제 서 고 등 학 교 장

## 【중요 수칙 메시지】

- (수칙1) “코로나19 예방접종 동참하기”
- (수칙2) “사람이 많고, 밀폐된 곳에서 마스크 쓰기”
- (수칙3) “30초 비누로 손 씻기, 기침은 옷소매에”
- (수칙4) “1일 3회(회당 10분) 이상 환기,  
다빈도 접촉부위 1일 1회 이상 주기적 소독”
- (수칙5) “코로나19 증상 발생시 진료받고 집에 머물며,  
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”

## ● 마스크 착용 의무·권고 상황 및 상황별 권고 마스크 ●

## &lt;마스크 착용 의무·권고 상황&gt;

-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및 병원급 의료기관의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입니다.
-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합니다.

## &lt;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상황 &gt;

- ① 코로나19 **확진자**이거나, 코로나19 **확진자와 접촉**(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)했던 경우
- ② 코로나19 **의심 증상**이 있거나, 코로나19 **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** 경우  
\* (코로나19 의심 증상) 인후통, 기침, 코막힘 또는 콧물, 발열 등
- ③ 코로나19 **고위험군**이거나, 코로나19 **고위험군과 접촉하는** 경우  
\* (코로나19 고위험군) 65세 이상 연령층, 면역저하자, 기저질환자 등
- ④ **환기가 어려운 3밀(밀폐·밀집·밀접) 실내 환경에** 있는 경우
- ⑤ **다수가 밀집한 상황**에서 함성·합창·대화 등 **비말 생성행위**가 많은 경우

- 코로나19 확진자가 불가피하게 외출할 때에는 KF94(또는 이하 동급) 마스크를 권장합니다.
- 고위험군이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, 또는 감염 위험시설(3밀)·취약시설(요양병원 등)에서는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를 권장합니다.

## <상황별 권고 마스크>

상황		보건용 마스크		수술용 마스크	비말차단용 마스크
		KF 94	KF 80		
의료 관련 상황	· 코로나19 환자를 돌보는 경우	필수		-	
	· <b>코로나19 확진자의 경우</b>	<b>(우선) 권장</b>		사용가능	
	· <b>코로나19 의심증상자이거나 의심증상자와 접촉할 때</b> · <b>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할 때</b>	(우선) 권장		사용 가능	
생활 방역 상황	·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 · 환기 어려운 3밀(밀폐·밀집·밀접) 환경인 경우	(우선) 권장		사용 가능	
	· 다수가 밀집해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			권장	

● **마스크 착용 예외 가능 상황**(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에서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에 해당)

-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의 침실·병실 등 사적인 공간에 동거인(다인 침실·병실을 함께 사용하는 입원·입소자, 상주간병인, 상주보호자)과 함께 있거나, 개인 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을 때
  - ※ 단, 코로나19 확진자 및 확진자의 동거인은 전파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 권고
  - ※ 발열·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으면서 고위험군(65세 이상, 기저질환자, 임신부 등)과 함께 생활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권고
- 음식 섭취, 수영·목욕, 세수·양치, 검진 등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하기 어려운 활동을 하는 경우

● **마스크 착용을 권하지 않는 대상**(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상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에 해당)

- ① 24개월 미만의 영유아, ② 뇌병변·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, ③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
  - ※ 단, 아동 간 발달 정도를 고려하여, 24개월 이상이라도 부모·보호자의 세심한 관찰·감독이 필요

※ 마스크 착용 의무 및 과태료 예외상황 등 자세한 내용은 “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” 참조